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12. 20

(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○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. 1. 8. 설치되었던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의 존속기한이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까지 연장 승인되었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. 6. 30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(안 조례 제1714호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헌범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로 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·정원 승인 통보가 있어,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까지 연장하기 위해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수정의결"

○ 별첨 수정안 참조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	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기구에대한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	제2조(한시기구에대한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"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"을

"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(안)
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	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기구에대한경과조치)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	제2조(한시기구에대한경과조치)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